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9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주거와 관련된 청년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여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생활기반 지원을 도모하고자 동작구에 거주하는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을 규정함(안 제16조제1항제4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kyh0680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p> <p>1. ~ 3. (생 략)</p> <p>4.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다. (생 략)</p> <p><u><신 설></u></p> <p>5. ~ 10. (생 략)</p> <p>② (생 략)</p>	<p>제16조(지원 사업) ①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다.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u>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u></p> <p>5. ~ 10.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관 계 법 령 】

▶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1.>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